「2025년 강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」 참가기업 모집공고

(재)강원문화재단에서는 「2025년 강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」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.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0일

(재)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

1. 목 적

- 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
-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

2. 사업개요

- **사 업 명**: 2025년 강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
- **협약기간**: 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5. 11. 14.(금) 까지(예정)
- **공고 및 접수기간**: 2025. 3. 10.(월) ~ 3. 24.(월) 18:00까지 ** e나라도움·강원문화재단·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및 e나라도움 접수
- **지원대상**: 강원도 소재 콘텐츠 기업
- 지원내용: 강원특별자치도 특화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
- **선정규모**: 3개 과제, 총 330백만원(과제 당 100백만원~150백만원)
 - ※ 사업자부담금: 총 사업비의 10% 이상(총 사업비: 지원금+사업자부담금)
- **지원분야**: 전 장르(분야 제한 없음)
 - ※ 게임, 출판, 만화(웹툰), 애니메이션, 방송, 음악, 캐릭터, 실감형 콘텐츠(VR·AR, 홀로그램, 프로젝션 맵핑 등), 융복합 콘텐츠 등 콘텐츠산업 전 분야
 - ※ 단, 영화 분야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함

3. 지원내용

○ 지역특화 콘텐츠 정의

- 지역(행정구역, 문화권)의 전통적,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특화된 문화·생태·시설/인프라·관광자원· 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(제작)되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

○ 중점방향 및 사항

- 지역 특화 소재가 포함되어 국내외 시장성 및 지역 기여도가 높은 콘텐츠
- 사업기간 이내 개발 완료하여 상용화(판매, 방영 등 사업화) 가능한 콘텐츠

□ 강원도 지역특화콘텐츠 예시

- 강원도의 특화성(사회·문화·경제·역사·인물·스토리 등)을 소재로 한 콘텐츠
 - 강원도 출신 인물과 그 지역을 소재로 활용한 콘텐츠
 - 강원도의 사회·문화·경제 등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조명할 수 있는 콘텐츠
 - 강원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이룰 수 있는 콘텐츠
- 강원도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 테마를 제시하는 콘텐츠

○ 지원규모

- 지원비율: 총 사업비의 90% 이내 지원(10% 이상 기업 현금 자부담)

총 사업비	신청지원금 비율	사업자부담금(현금) 비율		
100%(지원금+사업자부담금)	총 사업비의 9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	

※ 총 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산정하며,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

- 지원규모: 3개 과제, 총 330백만원(과제 당 100백만원~150백만원)

○ 세부요건

구 분	세 부 내 용
일반사항	• 제안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※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의 인건비,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용역비 등 ※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(PC 등)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내부인력 인건비	 총 사업 내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※ 표준계약서 체결 필수,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※ 제작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 고용인력(신입/경력, 프로젝트 참여기간)에 한해 참여 비율로 편성 가능 ※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50%로 제한 ※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(청년채용, 일자리 지원사업 등)을 수혜 중인 인력의 경우 참여인력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세부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를 0원으로 작성 하여야 함(인건비를 중복으로 계상할 수 없음/비고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)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지급,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적용 ※ 최저임금 준수 가이드: 임금(급여) 지급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총 임금(급여)을 근로시간을 나누었을 때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과제별 2인 이상 신규채용(정규직 또는 계약직) 필수(3개월 이상 고용 유지) ※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 함
유의사항	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※ 개발 미완성,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, 기타 기업 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 환수(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함) 협약종료 전까지 완성된 콘텐츠에 대하여 사업화 관리계획 또는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
지원금 지급	1차 지원금: 협약체결 후,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시 70% 지급 2차 지원금: 중간평가 시 "계속 지원"으로 평가될 경우 30% 지급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사항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1차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전액(100%) 협약기간+60일 ※ 협약체결 후, 1개월 이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시 협약 취소
지원금 사용	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집행 ※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, 집행된 부가가치세는 환수대상임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해당 분만 인정됨 ※ 협약 전 집행금액 소급 및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금액은 인정되지 않음 사업종료 후, 사업비 정산에 의해 부적정 집행으로 확인될 시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환수될 수 있음 모든 사업비는 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증빙자료를 갖춰 집행해야 함

	구 분	세 부 내 용
교육수료 의 무		•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필수 이수 ※ 명확한 보조금 집행·관리를 위해 참여인력 중 이체담당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을 수료해야 함
		•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이수(참여인력 전원) ※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: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의무교육, 민간 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
이 행	지원고지	• 지원과제의 최종산출물 내 지원문구 명시 필수 ※(예시)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콘텐츠진흥원, 강원특별자치도, 강원 문화재단, 강원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
	성과관리	• 지원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※ 사업수행 관련 자료, 사후 결과조사(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 성과에 대한 조사) 등

4. 지원자격

○ 지원대상

- (주관기업)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콘텐츠 기업 ※ 필요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
 - 1) 사전 공고 시작일 현재, 사업자등록증(6개월 이전 등록)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해당하며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2조에 따른 '문화산업'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
 - 2) 사전 공고 시작일 현재,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3) 지사의 경우, 종사자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인 기업
 - 4) 참여기업 참여 시, 주관기업 참여율(지분율 또는 사업비 배분율)이 51% 이상 이어야 함
 - 5) 부동산업 지원 불가, 콘텐츠 기업(영리법인, 일반과세자, 영리 콘텐츠협동조합) 지원 가능
 - 6) 내용이 다른 과제 수행계획서로 중복지원 하거나,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타 기관에 중복 지원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제외 및 협약 해약(주관·참여기업 모두 해당)
 - 7) 지역 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위해 도외 기업과 컨소시엄 가능(최대 1개 기업)
- (참여기업) 소재지 상관없이 최대 1개 기업 가능
 - 1) 도외 기업 가능
 - 2) 대기업 지원 가능(정부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으며, 총사업비의 20% 이상 사업자부담금 필수, 유통판로 확보서 제출 의무)

○ 지원조건

- 일자리 창출: 주관기관의 경우 신규인력 2인 이상 채용(해당 사업의 100% 참여율)
 - 1) 사업기간 내 신규인력은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 유지 원칙, 퇴사 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함
 - 2) 제안신청서와 달리 신규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그에 따른 지원금 환수 및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- 사업기간 이내 개발을 완료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수행
- 지식재산권(특허, 상표, 저작권 등) 등록 권장
- BM설계가 명확한 콘텐츠

○ 참가기준

- o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(연구개발사업 제외)인 경우
 - ※ 단,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, 지원금 5.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
- ㅇ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대기업이 아닌 경우
- o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
- o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금액과 신규 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
- o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국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의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
- o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
- o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강원문화재단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
- o 사업자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)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
 - ※ 그 외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「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」에 따름

○ 지원제한 대상

- o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제외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
- ㅇ 신청일 현재, 사업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제한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
- o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, 공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
- o 신청일 현재,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사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
- o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 금액과 신규 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
- ㅇ 신청일 현재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
- o 신청일 현재,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
- ㅇ 한국콘텐츠진흥워 및 강워문화재단 상임 임원(또는 이사)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
- o 신청일 현재,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,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
- o 신청일 현재, 사업자(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)가 국가 및 지자체 등 각종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경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)등을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 한 경우
- o 신청일 현재 사업자(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)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
 - ※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
 - ※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,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 함

○ (참고)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 및 2항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<개정 2010. 6. 10, 2011. 5. 25, 2014. 1. 28, 2016. 3. 29, 2020. 2. 11, 2020. 12. 8, 2022. 5. 3, 2023. 5. 16, 2023. 8. 8.>

- 1. "문화산업"이란 문화상품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다.
- 가.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
- 나, 음악 게임과 관련된 산업
- 다.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
- 라.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
- 마. 「국가유산기본법」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
- 바. 만화·캐릭터·애니메이션·에듀테인먼트·모바일문화콘텐츠·디자인(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)·광고·공연·미술품·공예품과 관련된 산업
- 사. 디지털문화콘텐츠,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·가공·개발· 제작·생산·저장·검색·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
- 아 대중문화예술산업
- 자.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, 조형물, 장식용품,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
- 차.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. 다만, 「전시산업발전법」제2조제2호의 전시회·박람회·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.
- 카.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
- 2. "문화상품"이란 예술성·창의성·오락성·여가성·대중성(이하 "문화적 요소"라 한다)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·무형의 재화(문화콘텐츠,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)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.

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○ 신청절차

- 신청기간: 2025. 3. 10.(월) ~ 3. 24.(월)
- 신청방법: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(www.gosims.go.kr)
- 신청안내
 - 필수 및 선택 제출서류를 미리 작성(준비), 마감 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함
 - · 강원문화재단, 강원영상위원회 및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사업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접수
 -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
 - ※ 시스템 정기점검, 긴급점검 등에 따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,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갖고 신청 필요
 - ・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 내 신청 완료가 안될 경우, 서류 제출 불가

○ 신청방법

구 분	세부내용
온라인 접수 (e나라도움)	○ e나라도움 홈페이지(www.gosims.go.kr) 접속 후, 회원가입 ○ [사업수행관리-신청관리-사업신청관리-공모현황]에서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지정 ○ 공모기관에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지정 후 [검색]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○ 공모목록에서 "2025년 강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" 선택 ○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, 오른쪽 위에 [신청서작성] 버튼 클릭 ○ [사업기본정보], [수행기관정보], [재원조달계획], [자격요건확인], [피일첨부] 탭 순서로 작성 ○ 제출폴더 양식.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 대로 정리,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※ MacOS에서 압축할 시 파일 깨짐 현상이 발생하오니 확인 후 업로드 ○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[신청서제출] 탭의 [신청서제출]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 ※ 2017년부터 e나라도움 사용이 의무사항이며, 해당 시스템에 대한 모든 사항은 [한국 재정정보원]에서 운영하므로, 시스템에 대한 오류·문의·불만은 사업 공고기관인 (재) 강원문화재단에서 대응해 드릴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사업신청 전 회원가입, 매뉴얼 숙지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, 문제발생 시 e나라도움 상담센터(1670-9595)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접수 및 문의처

- 사업 관련 문의: 강원영상위원회(033-240-1381)
- e나라도움 관련 문의: 1670-9595, 홈페이지 http://www.gosims.go.kr

○ **제출서류** ※ 주관 및 참여기관 모두 제출

구분	제 출 서 류	제출형식	유의사항
1	과제신청서 (주관기관 제출)	PDF, HWP (둘다 제출)	-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- 법인에는 법인 직인 날인, 대표자는 서명으로 제출
2	수행기관 소개서 (주관, 참여)	한글파일	-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(주관기업, 참여기업 양식 다름)
3	정부지원 수혜실적	(HWP)	-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
4	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		-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<mark>서명/날인</mark> 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 제출
5	사업자부담금 확약서	스캔파일 (PDF)	- 지정양식 작성, 직인 날인하여 스캔 파일로 제출
6	신용평가등급확인서		-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
7	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	한글파일 (HWP)	-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- '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'에 따라 작성
8	위탁사업 계획서	(,	- 해당시(위탁사업비 편성시)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
	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	엑셀파일 (지정양식)	- 각 기업별 지정양식에 대표자, 책임자 등 사업수행
9	참여인력 이력		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-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
	참여인력 과제 참여현황	한글파일 (HWP)	- 개글만국 외국사이는 무표 단국에 대학의 국이
	신규인력 채용계획		- 제작계획서 內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항목 참조
	표준계약서 활용 계획 및 활용 실적	한글파일	- 최근 3년간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(증빙) - 표준계약서 활용계획 또는 서약서
10	윤리·인권규약	(HWP)	- 기업 자체 약관, 규정, 규약지침 등(자유양식)
	사회적기업 인증서	스캔파일 (PDF)	- 사회적기업 인증서 제출(단, 예비사회적기업 제외)
11	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	스캔파일	-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스캔 파일로 제출 - 참여인력 전체의 <mark>자필서명 필수</mark>
12	사업자등록증 사본 (기업소재지 확인용)	(PDF)	-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스캔 파일로 제출
13	발표평가자료 (주관기관 제출)	PPT 또는 PDF	- 발표자료 제출(지정양식 없음, 10분 이내)
14	선택제출서류	자유양식	-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-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- 기획단계(스토리 등)가 기 완성된 자료 포함

^{※ 1~12}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

^{※ 1~14}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, 압축파일 용량: 50MB 이하

○ 서류 제출 시 준수사항

- 목록에 있는 모든 서류 제출 필수
-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음
-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·과장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취소,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

7. 선정심의 및 심의기준

○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(안)

공고 및 접수	행정심의		서면심의	현장평가	소집심의	협약체결
· 3.10(월 ~ 3.24(월	3월 4주 예정	î	4월 1주 예정	4월 2주 예정	4월 3주 예정	5월 2주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, 향후 세부 일정은 개별 통보

○ 심의위원 선정방법

-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콘텐츠분야 전문 예비심의위원풀 구성 및 고유번호 지정
- 과제신청서 접수 시 접수 기업별 예비심의위원 고유번호 선정
- 예비심의위원 다빈도 순위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

○ 심의절차 및 방법

- 행정심의: 적격 여부 판정 후 적합과제를 서면심의 대상으로 선정
- 서면심의: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, 고득점순으로 6~9개 과제 선정
- 현장확인: 적격 여부 판정 후 적합과제를 면접심의 대상으로 선정

 ※ 보완사항 발생 시 면접심의 전 지정일까지 해당사항 보완 완료 후 면접심의 대상에 포함

 ※ 현장평가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는 추후 별도 통지 예정
- 소집심의
 - ·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,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, 고득점 순으로 3개 과제 이상 선정

- · 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면접심의 기준 고득점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사업비 확정
 - ※ 우선순위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할 시, 후순위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
 - ※ 괴제요약서, 세부산출내역서, 예산항목 사용 계획서 등 예산심의 의견을 반영한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
 - ※ 과제 결과물 도출 타당성 검토 등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 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
- (소요예산 적절성) 과제 비목별 소요예산의 지원사업과의 적절성 여부
- (사업 관련성) 참여인력, 위탁내용 등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

○ 평가기준 및 배점

- 서면심의: 제출된 서류 및 자료를 심사항목 기준에 의거 평가

구분지표	세부지표	내 용	배점	
	1. 수행관리체계 구축	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	5	
A. 수행기관 (13점)	2. 기관전문성	신청기관 추진실적(신청과제 유사분야) ※ 신청기관 유사과제 수행이력 중 성괘결과가 정상수행 된 경우만 해당		
	3. 제작인프라 확보	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인프라 확보 여부	3	
B. 참여인력	1. 참여인력 확보	참여인력 확보(정규/비정규/용역) 여부	5	
(20점)	2. 참여인력 전문성	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(또는 학위) 여부	15	
C. 사업비	1. 사업비 규모	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	5	
(10점)	2. 지원금 편성	지원금 편성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		
	1. 과제 이해도	목표 시장 및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	15	
D. 과제기획력	2. 기획 독창성	기획된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	10	
(50점)	3. 기획 완성도	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, 현실성 확보여부		
	4. 기획 적합성	과제내용 및 소재가 강원도의 특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	15	
	1. 일자리 창출	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계획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	2	
	2. 사회적기업(계량)	사회적기업 인증서 제출 여부	1	
E. ESG (7점)	2 표즈게야시/게라	표준계약서 활용 계획서 제출 여부		
	3. 표준계약서(계량)	표준계약서 활용 실적 제출 여부	1	
	4. 윤리인권	고용인력 권익보호 규약(정규,비정규,프리랜서,위탁) 제출 여부	2	

※ 동점 발생 시 '과제기획력' → '참여인력'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

- 소집심의: 제출된 자료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평가항목 기준에 의거 평가

구분지표	세부지표	내용	배점
A. 수행기관	1. 재무건전성 (계량)	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(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평가)	
(10점)	2. 추진의지	수행책임자의 추진 의지는 명확하고 확고한가?	
	1. 작품성 및 완성도	콘텐츠 자체의 질적인 가치	10
B. 과제내용	2. 대중성(상업성)	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	10
(40점)	3. 경쟁력	시장의 타 작품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정도	
	4. 수행가능성	기한 내 개발 완료 가능성	10
	1. 투자매력도 및 경제적 성과	투자유치 가능성 및 기대 매출(성과) 규모	
	2. 지역기여도	지역대표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 및 강원 콘텐츠산입 발전 기여도	
C. 기대성과 (50점)	3. 사회적 파급효과	타 산업(관광업 등)과 연계 가능성 및 영향력	
	4. 목표(성과) 타당성	제시한 목표(성과) 및 상용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여부	
	5. 확장가 능 성	OSMU/크로스미디어/트랜스미디어 등 콘텐츠확장성	10

[※] 동점 발생 시, '기대성과 → 과제내용 → 수행기관'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

8. 지원금 지급 및 절차

- **지워금 지급 관려**: 선정된 과제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
 - 1차 지원금: 협약체결 후 중간평가 이전까지 1차 지원금 지급(70%)
 - · 기한 내 교부신청서류 및 e나라도움 교부신청 완료 시
 - · 기관별 국고보조금, 도비보조금, 사업자부담금 전용 관리계좌 별도 신규 개설
 - 사업자부담금 입금확인서 제출 시
 -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시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분리하여 발급)
 - ※ 이행(지급)보증보험 발급 시 수수료(보증료 혹은 보험료)는 수행기관 부담
 - ※ 보험금액: 지원금의 100%, 보험기간: 사업기간 + 60일

- 2차 지원금: 중간평가 결과 "계속(70점 이상)" 으로 평가된 경우, 2차 지원금 지급(30%)
 - ※ 중간평가 결과 "중단"으로 평가된 경우,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해약, 기 지원금 환급 및 제재 조치 추진
 - ※ 사업비는 평가 시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

○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준수사항

- 지원금은 협약기간내의 사용분만 인정되며 소급 적용이 불가함
- 강원문화재단에서 공고한 '사업비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' 및 안내에 따라 사업비편성 및 집행 준수
-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수수료,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 등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체 해당 기관에서 부담
- 강원문화재단에서 지정하는 일자까지 지정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증 보고서 및 정산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
- 예산편성·집행 시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

9.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,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기획재정부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한국콘텐츠진흥원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」, 「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」, 「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」등 관련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강원문화재단의 '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'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, 수행기업의 책임임
- ※ 공고 및 강원문화재단 지침에 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, 규정, 지침 및 한국콘텐츠 진흥원 규정, 규칙, 지침에 따름

- 강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에 지원한 과제는 타 지역의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- 공지된 해당일의 접수 시간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,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
 - ※ 사업 공고문에서 제시한 접수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시,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접수 불가
 - ※ 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 미비 시 1차 서면심의 대상에서 제외
- 제출서류 중 인감 날인 혹은 서명란이 누락 된 경우 신청서류 접수 불가
-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(단, 강원문화재단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)
-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재단이나 타 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해약, 지원금 환수,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, 협약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본 사업은 '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콘텐츠기업'을 지원하므로 주관기관의 경우 사업 선정부터 협약 종료 후 1년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이전 불가
- 주관 및 참여기관 중 1개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(지원금 환수)
- 선정평가 기준 미달 시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우선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된 기업이 과제수행을 포기할 시, 후순위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
 - ※ 선정기관의 사유로 사업 포기, 타 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 등 지원 취소사유 발생 시에는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포기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
-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 결과는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공지함
- 선정평가는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외부 평가위원을 통해 선정함에 따라, 주관적인 판단으로 평가결과 혹은 평가위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-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, 협약 시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완납증명서(주관기관 및 참여기관)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
 - ※ 단, 코로나19 관련 국세청 세정지원 사업을 통해 국세·지방세를 징수유예 받은 경우 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시 인정(체납처분유예는 불인정)
-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,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
-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과제수행기관은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(신용평가등급확인서 수수료 등)은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함
-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기한 내 과제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화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, 강원문화재단에서 공지한 일자까지 결과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
- 과제수행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(수행기업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강원문화재단 및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
-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부가가치세 및 계좌이체 수수료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음
-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,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모든 자금 집행 및 매출 현황 등에 대하여 강원문화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증을 받아야 하며, 회계검증 및 최종 정산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여야 함
- 과제수행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,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- 지원과제 수행 중 필요한 자산(PC 등)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-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문화체육관광부 '민간보조사업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안내서'(2021) 준용
 -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(교부취소, 협약해약 등)
 -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, 신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
 - ※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-5678(1번), 홈페이지 <u>https://bora.kocca.kr</u>
- 과제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('18.3)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중간평가 전까지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 - ※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성희롱·성폭력 근절대책('18.3): 공모사업 등 지원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 의무화
 - ※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('21.1.):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(프리랜서 등 포함) 성희롱·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
 - · (성희롱 예방교육 인정범위)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정의무교육,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,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
 - · (이수 확인서 인정기간) 협약체결일 ~ 중간평가 이내 발급된 사항에 한해 인정
 - · (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대상) 주관 및 참여기관 모든 참여인력
 - ※ 신규인력 채용 시 별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후 확인서 필수 제출
- 과제 결과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콘텐츠진흥원, 강원특별자치도, 강원문화재단, 강원영상위원회에서 홍보·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행사 등에 전시·시역될 수 있음
- 선정기관은 향후 3년간 사후 결과조사(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성과 조사 등)에 성실히 임해야 함
-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현장평가 및 협약 시 강원문화재단이 요청하는 일시까지 추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,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과제수행기관은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협약사항 미이행 시 협약해약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함
-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10. 참고사항

- 사업수행 및 관리방법 : e-나라도움 예치형
 - 최종사업 선정 후 e-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사업비 집행
 - 사이트 : http://www.gosims.go.kr
 - 국고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됩니다.
- ☞ **국고보조금 예치:** 국고보조금은 '통합예탁기관(한국재정정보원)'에 예치하여, 등록 통장에서만 집행하며, 집행 전 집행내역 등록
- ☞ **사업자부담금 집행**: 예산집행계획의 세목별로 입력한 재원에, 사업자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금 집행 시 사업자부담금 비율 이상으로 사업자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함(세목별 비율 적용)
 - * 사업 신청 시 세목 별 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 작성
- ☞ 사업비 계좌 관리: 기업별 국고보조금, 도비보조금, 사업자부담금 관리계좌를 별도 신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해당 계좌는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, 원금이 보장되며,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

 ★ 1차 지원금 지급 전에 한하여 입력한 계좌 변경 가능

[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]

-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
- 제23조(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)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※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
- ※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도<u>비지원금, 국고지원금 순으로 집행</u>
- * 예산산출내역에 기재된 필요경비 중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여부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나 추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가예산 산출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